

졸업종합시험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제정 2019.05.22. 개정 2022.04.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졸업종합시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졸업종합시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졸업종합시험 실시계획
2. 졸업종합시험 과목 범위
3. 합격 사정기준
4.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학과 학과장과 관련 학과에서 추천한 교수 3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4.04.>

제4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교무팀 직원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